

# ○ 백석대학교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위원회 결과내용

## I.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교과 외
						인문사회			수학	과학				기타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면접고사	재외국민과 외국인 백석인재 정시 일반전형	인문사회	없음	1-135		○	○	○		○		○	○	○	
	재외국민과 외국인 백석인재	자연	없음	1-85			○	○		○	○	○	○	○	
	체육특기자	체육	없음	1-25			○	○				○	○		

※ 기타 교과로 정보, 보건, 기술·가정, 진로와 직업, 운동과 건강 생활에서 출제함.

※ 예능계열은 공교육정상화법 16조 3항에 의거하여 적용하지 않음.

※ 세부 문항은 부록 2 참조

## II. 선행학습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구분	판단기준		
	항목	세부내용	이행 점검
대학별 고사 시행 관련 이행 사항 점검	1.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① 기간 내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 공개 (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	○
	2. 선행학습영향 평가보고서 항목 준수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
		⑥ 현직 고교교사 포함 여부	○

### 1. 선행학습 영향평가 방법·절차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부록 1 참고)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칙 제2조(기능) 2항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와  
관련한 세부시행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및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하여 운영함.

## 2.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한 조직 구성과 기능

### 가. 위원회 조직

내부위원은 6명 이내, 외부위원은 2명(천안, 아산지역 고교 3학년 교사) 이내로 구성

### 나. 위원회 기능 및 역할

- 대학별 고사문제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 선행학습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계획

- 2017. 7. ~ 2018. 2. : 대입전형 진행
- 2018. 3. 19 :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위원 위촉
- 2018. 3. 27 : 2017학년도 자체영향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및 평가
- 2018. 3. 31 : 2017학년도 자체영향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입시홈페이지 탑재
- 2018. 4. 2 ~ 20 : 2018학년도 면접고사 예상문제 출제완료
- 2018. 4. 27 ~ 28 : 2018학년도 면접고사 예상문제 출제 자체감수
- 2018. 5. 1 ~ 11 : 2018학년도 면접고사 예상문제 고교교사 감수
- 2018. 6. 22 : 2018학년도 면접고사 예상문제 입시홈페이지 탑재
- 2018. 7. ~ 2018. 2. : 입시홈페이지 탑재된 문제에서 면접고사

## Ⅲ.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 1. 출제 전

- 면접 고사 문항 출제의 기초자료를 각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EBS 교재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고등학교 교과서를 선별하여 사용함
- 2017. 4. 12 ~ 21일까지 10일간 문제출제 참여자에게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제출제 금지 및 EBS 교재안의 내용을 기본으로 문제출제 할 것을 참여하는 내부교원들에게 교육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고등학교 교과서를 일부 이용하도록 함

### 2. 출제과정

2017. 4. 28 ~ 29일 제출된 문제를 가지고 내부 선정위원 5명을 구성하여 선행학습

유발요인이 있는지 자체 감수 시행

3. 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반영 여부와 반영 방법·절차

자체감수 완료 후 2017학년도 면접고사 예상문제를 2017. 5. 22 ~ 6. 9일까지 19일 동안 고교 3학년 부장교사 3명에게 전달하여 담당과목 선생님과 함께 해당 고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4. 출제이후

최종 외부 교사 감수 후 의견 반영하여 2017. 6월 28일에 면접 예상문제 전체를 본교 입시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수험생들이 대학별 고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음

IV. 최종 선발인원 및 문항 분석 결과 요약

1. 대학별 고사 대상자 최종 선발 인원

대학별 고사유형	운영 여부	선발 인원	영향평가 대상 여부	해당전형	
면접고사	○	613	○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백석인재, 체육특기자
				정시모집	일반전형(정시)

2. 문항 분석 결과 요약

평가 대상	입학전형	계열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문항붙임 번호
면접고사	재외국민과 외국인 백석인재1 백석인재2 체육특기자 일반전형(정시)	인문사회	1-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어 독서와 문법, 문학, 화법·작문·문법</li> <li>사회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세계사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li> <li>과학 물리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화학 I</li> <li>기타 교과 정보, 보건, 기술·가정, 진로와 직업, 운동과 건강 생활</li> </ul>	준수	문항카드 1-135
		자연	1-85				문항카드 1-85
		예체능	1-25				문항카드 1-25

## V.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우리 대학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대학별 고사(면접) 문제를 출제 함에 따라 대입전형 개선 및 변경 사항은 없으며, 전년 대비 고등학교 교사의 문제 감수를 1개교 증원하여 총 3개 고등학교에서 참여하였음. 또한 매년 고등학교 교사의 감수 완료 후 6월 말경 홈페이지에 면접 예상문제를 탑재하여 수험생들의 선행학습 유발을 최소화 하고 있음.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논술, 적성 고사 등 사교육이 유발되는 전형을 치르지 않고, 면접고사의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여 운영할 예정임.

#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백석대학교 학칙 제 14조에 의하여 백석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 심의
2. 대학입학전형관리 기술의 개발
3.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
4.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
5. 대학입학 정보의 개발과 홍보
6. 기타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

②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와 관련한 세부시행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전임교원 및 팀장 이상의 직원으로 하며 그 구성은 학사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관리처장, 교목실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시설관리처장, 전산정보원장, 국제교류처장, 취업진로지원처장, 입학관리팀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의 직원으로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업무의 성격상 위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위원장은 학사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신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하고 회무를 처리한다.

**제 5 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6 조(회의록)** ①위원회의 모든 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대학원)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백석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칙』 제2조제2항 세부시행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영향평가의 정의)** “자체영향평가”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점검·분석·영향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체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조에 따른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사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체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7명 이내, 외부위원은 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내부위원은 입학관리처장, 교무처장, 입학관리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임교원 및 교내 전문가를,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관리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심의 한다.

1.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3.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입학관리처 직원 중 1인을 선임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 자체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의 공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8조(기타)**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2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